

대한민국 국립식물원
농업 및 수자원부간 협약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간
식물검역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이 양국의 목적을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원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와
식물검역분야 협력을 강화하고자

• 양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모두나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간 식물검역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 - 이하 “양측”이라 한다 - 는, 식물검역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 1 항

이 약정의 조정과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 식물검역검사원

제 2 항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를 적용한다.

-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
: 국가의 영토에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분포하지만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에 중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공식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식물의 해충, 병원체 및 잡초
- 검역대상물품(regulated article)
: 특히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식물, 식물성산물, 저장장소, 포장, 이동수단, 컨테이너, 흙과 살아있는 유기체, 식물위생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물질

제 3 항

식물검역분야 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양측은 검역병해충의 발생과 식물위생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정보교류, 병해충 분류동정과 검역방법 등 기술교환 및 상호훈련에 협력한다.

양측은 검역대상물품이 양국간의 수입, 수출 및 경유 시 한 국가의 영토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로 검역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검역병해충의 발생, 방제, 박멸과 관련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상호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양측은 식물검역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업적을 연구하고 국경검사장소에서 식물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4 항

검역대상물품의 수입 및 수출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양측은 국경검역을 수행한다.

제 5 항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각 검역대상물품 화물은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는 영어로 발급한다.

제 6 항

수입검역 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자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소독, 반송 또는 폐기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제 7 항

양측이 검역상 중요하게 간주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상대국의 요청 시 제공한다.

제 8 항

양측은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 전문가들이 상호 합의할 경우, 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항

이 약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 승낙에 의해 해결한다.

제 10 항

이 약정의 규정들은 다른 국제조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 항

양측은 상호간 서면 동의에 의해 이 약정의 통합된 부분으로 간주되는 별도의 문서로 이 약정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 12 항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 동안 유효하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다음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일방 당사자는 이 약정의 효력 종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다른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

2010. 2. 10 일에 서울에서 한국어, 우즈베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된다.

이 약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 및 수자원부를 위하여

파종서

